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12. 조지연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5. 2.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지연의원)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기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존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소유주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영해온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작사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①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의 예

외사유로 ‘경유자동차 이외의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②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대체자동차의 제작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연착륙과 더불어 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③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온 경유자동차에 대한 신규 사용 제한 기준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변경하여 차량 소유주의 명목이 행정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잦은 어린이 교육시설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환경부는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승합차의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9. 기타사항

없음